

[붙임]

인천광역시서구 제2017-1550호

2018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서구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고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제공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11월 09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지정 대상 :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

*사업계획서 별첨

■ 지정 기간 : 2018. 1. 2 ~ 2019. 12. 31까지

■ 신청자격

-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 등을 받은 비영리단체법인, 개인 사업자, 상법상 법인 등으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1]과 제9조[별표2]의 요건을 갖춘 기관
-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 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공고일 현재 서구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관

■ 신청서 접수

- 신청 및 접수기간 : 2017. 11. 09. ~ 2017. 11.17 (8일간)
근무시간 내(09:00 ~ 18:00), 휴일제외
- 제출서류 : 제출서류 순서별로 편철하고 A4규격에 맞추어 1권 책자로
제본하여 원본1부, 사본6부 제출(페이지 명기)함.
- 접수방법 : 직접제출
- 접 수 처 : 서구청 제2청사(2층)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 1호]◦ 사업계획서 1부 [서식 2호]◦ 발달재활서비스 내용 요약서 1부 [서식 3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정보 1부 [서식 4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정보등록 신청서 1부 (신규신청인 경우) [서식4-1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장애인복지시설만 해당)◦ 제공기관의 평면도(시설의 층별·구조별 면적표시)와 설비구조 내역서 및 소방시설 설계도면◦ 제공기관의 장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서식 5호]<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적 구비서류 외에 바우처 단가, 제공기관 시설 현황 및 제공인력 관련 정보
자료 등 현황을 포함◦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사업자등록증 1부 |
|--|

❖ 기한 내에 제출된 서류가 미비 시 추후 보완 요구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동 사업은 수요자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을 받아 사업 운영)
- 지정 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장, 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바우처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4대보험을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보험의 가입 기준에 따라 처리

- 제공기관 이용자에 대해 배상·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 분기별 사업실적을 해당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고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비는 별도 회계관리를 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 포함될 내용이 누락되어서는 안됨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르르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비 고

- 재지정기관 중에서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시설 부적합 통보가 온 기관은 2018.01.02.~2018.12.31.까지 지정 .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소방시설을 갖춰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정기간 연장가능. 기간 내 소방시설 기준을 갖추지 않으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기관지정 취소 가능

■ 선정방법

- 선정방법 :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 ※ 심사위원 배부용 브리핑(ppt) 자료 제출 :
 - ▶ 2017.12. 15.(금)까지 파일제출(jihye0717@korea.kr)
 - ▶ 서비스 제공기관 심사평가표 기준으로 작성
- 심사 일정 : 개별통보 (2017.12.21 심사예정)

■ 선정결과 통보

-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통보 및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

■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560-43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